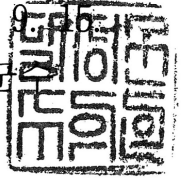


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의안 번호	213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9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2021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총괄

- 지출결정액 : 금3,500,000원(금삼백오십만 원)
- 지 출 액 : 금3,500,000원(금삼백오십만 원)
- 이 월 액 : 해당없음
- 불 용 액 : 해당없음

나. 일반회계

- 지출결정액 : 금3,500,000원(금삼백오십만 원)
- 지 출 액 : 금3,500,000원(금삼백오십만 원)
- 이 월 액 : 해당없음
- 불 용 액 : 해당없음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

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관 련 서	예비비 배정과목		지 출 결정일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적 요
	편성목	통계목						
농업 정책과	계			3,500,000	3,500,000	0	0	
	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	302-02	2021. 08.17.	3,500,000	3,500,000	0	0	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가지원

□ 지방자치법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